

'22년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사업 개시 안내

○ 지역 : **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**

1. **신청기간** : '22. 1. 3.(월), 09:00부터(재원소진 시 까지)

2. **신청방법**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코로나 19로 인한 방문접수 지양)

○ 우편접수 주소 : (05836)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 (소노타워)
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지역2부

3. 지원대상

- 1)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
- 2)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☞ 지원제외 대상('22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변경 시에는 제공지)

1.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
 2.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
 3.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(단,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*은 제외)
- *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결정 이후 잔여금에 대한 융자 신청(세부사항 향후 공지)

4. **지원금액** :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)

5. **지원조건** : 고정 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

6. 주요 지원품목

- 1)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
※ 주요설비명: CNC 머시닝센터, NC 밀링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 로봇 등
- 2)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**방호조치**
- 3)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
- 4)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7. **우선지원 선정기준 및 결정기준** : [첨부 1] 참조

○ 선정기준점수가 40점 미만인 사업장은 하반기에 재원범위 이내 결정
- 지원신청금액 합계가 월별 예산배정액 초과 시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하여
고득점 순으로 배정액 이내 우선 결정

* 선정기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장은 월별 배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지원

8. **문의처** : 지역2부 02-2086-8025

9. **제출서류** : [첨부 2] 참조